

의안번호	제179호
의결연월일	2022. 12. 5.

#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11월 14일,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2022년 12월 5일,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예산실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『지방재정법』 및 『지방보조금 관리 기준』 등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우리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민원 해소 및 조례의 내용상 흠결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제18조제1항제6호 “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경유” 삭제
- 제20조제3항 “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” 삭제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 5. 토론 요지 : 생략

## 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